

## 여성노인의 인권: 나이듦과 젠더의 교차

Human rights of older women: the intersection between ageing and gender

(July 16, 2021)

클라우디아 말러, 노인의 모든 인권 향유에 관한 독립 전문가

(Claudia Mahler, Independent Expert on the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by older persons)

---

### 목차(Contents)

I. 서론(Introduction)

II. 나이듦과 젠더의 교차(Intersection between ageing and gender)

III. 여성 노인이 겪는 불평등과 차별(Inequalities and discrimination experienced by older women)

A. 교육과 평생 학습(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B. 소득보장, 사회적 보호 및 재산권(Income security, social protection and property rights)

C. 건강권(Right to health)

D. 자주성과 독립성(Autonomy and independence)

E. 장기 요양과 지원(Long-term care and support)

F. 폭력, 학대 및 방치(Violence, abuse and neglect)

G. 갈등 및 긴급 상황(Conflict and emergency contexts)

IV. 여성 노인의 권리 증진 및 보호(Promoting and protecting the rights of older women)

A. 법률 및 정책 프레임워크(Legal and policy frameworks)

B. 여성 노인의 참여, 기여 및 자기 통제(Participation, contribution and agency of older women)

V. 결론 및 권고 사항(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 IV. 여성 노인의 권리 증진 및 보호

### (Promoting and protecting the rights of older women)

#### A. 법률 및 정책 프레임워크(Legal and policy frameworks)

65. 국제 인권 프레임워크는 여성 노인의 권리에 대한 중요한 보증과 보호를 제공하며, 구체적으로 상술되었다. 노인을 위한 국제법은 없지만,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은 모든 여성이 연령과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보호를 담고 있다. 성(sex)과 젠더에 기초한 차별이 연령 등 기타 요인에 의해 악화하고 심화하는 경우, 국가는 그러한 교차적 형태의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sup>72</sup> 이 협약은 사회보장권과 관련된 노년에 대해 특정적으로 언급한 내용을 포함한다 (art. 11 (1) (e)).

66.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는 고령 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노인 문제를 가장 일관되게 다루는 인권 조약기구이다.<sup>73</sup> 여성 노인과 그들의 인권 보호에 대한 일반권고 제27호(2010년)에서 상기 위원회는 노년에 존재하는 다수의 다차원적인 불평등과 차별을 서술한다. 여기에는 이러한 것이 데이터 수집에서 적절히 다루어지지 않거나 당사국에 의해 충분히 처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포함된다. 다수의 기타 일반 권고안에서 고령이 여성의 경험을 형성하는 하나의 요인이라고도 언급된다. 이것의 예로서, 젠더에

<sup>72</sup>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general comment No. 28 (2010), para. 18.

<sup>73</sup> OHCHR, “Update to the 2012 analytical outcome study on the normative standards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relation to older persons”, working paper (March 2021).

기반한 폭력, 기후 변화의 맥락에서 재해 위험 감소의 젠더 관련 차원, 시골 여성의 권리 등이 있다.<sup>74</sup>

67. 또한, 상기 위원회는 기존의 보고 메커니즘을 통해 여성 노인의 상황과 관련한 국가의 관행을 조사한다. 이것의 예로서, 젠더 관련 폭력, 연령별 데이터 또는 적절한 사회 보호 및 연금 등이 있다. 요약하면, 여성 노인의 특정한 관심사에 대한 고려는 체계적이지 않으며, 노년기에 대한 언급은 주의를 요하는 많은 교차 요인 중 하나로 나열되는 경우가 많다. 국가 보고서에 관한 이슈와 질문의 23개 리스트 중, 또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이 위원회의 보고서 채택 전 이슈 및 질문 리스트 중 오직 10개만이 여성 노인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을 담고 있었는데, 이는 대부분 기타 약자나 소외 그룹과 관련한 고려 여성에 대한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관찰과 권고안의 결론에서 여성 노인에만 초점을 맞춘 언급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sup>75</sup>

68. 다른 국제 인권 메커니즘을 통한 여성 노인에 대한 관심은 더 제한적이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는 대체로 일반 노인을 고려하지만, 여성 노인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향유에서 겪는 다중적이고 복합적인 차별을 연령이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정년, 연금제도, 결혼으로 인한 재산과 유산에서의 평등 요구를 재차 강조했다.<sup>7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노인이 직면하는 특정한 필요와 도전은 일부 주제 영역에서 널리 고려되지

<sup>74</sup> Submission by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sup>75</sup> With respect, for example, to gender-based violence and the right to education, training and lifelong learning, see OHCHR, “Update to the 2012 analytical outcome study on the normative standards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relation to older persons”, paras. 125 and 176.

<sup>76</sup>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 16 (2005), paras. 5, 26 and 27.

않는데, 예를 들어, 성 및 생식 건강권에 대한 지침 등에서 그러하다.<sup>77</sup>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국가가 나이와 성별에 민감한 조치를 채택하도록 요구하는데, 이것은 특히 여성 노인 장애인과 관련이 있다.<sup>78</sup>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는 마법과 관련된 비난이 여성 노인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sup>79</sup> 지난 10년 동안, 여성 노인 권리 관련 개인의 불만 사항에 대한 두 가지 결정만이 받아들여졌다(see para. 28 above). 2019년,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는 여성 노인의 권리와 그들의 경제적 권한에 대한 패널 토론을 소집했다(see A/HRC/44/36).

69. 여성 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경험과 우려는 젠더와 노년 사이의 교차점에서 나오는 구조적 불이익과 차별을 다루기에 국제 인권 시스템하에서 충분히 가시화되지 않았다. 이는 기존의 국제인권조약기구가 이미 많은 의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지만, 국제 인권 프레임워크에서 노인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단편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것과도 연관되는데, 이러한 국제 인권 프레임워크는 여성 노인 등 노인의 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70. 구속력이 없는 국제 정책 이니셔티브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에 충분하지 않지만, 이러한 우려와 여성 노인이 직면하는 문제에 주의를 환기한다. 북경선언(Beijing Declaration)과 행동강령(Platform for Action)은 연령 차별의 영향을 반영하며, 여성 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정

<sup>77</sup>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 22 (2016).

<sup>78</sup>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pecifically addressed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in its general comment No. 3 (2016).

<sup>79</sup> OHCHR, “Update to the 2012 analytical outcome study on the normative standards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relation to older persons”, para. 81.

분야에서의 행동에 대한 권고 사항을 포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노인은 검토 과정과 논의에서 많은 부분 가시적이지 않다.<sup>80</sup> 북경선언과 행동강령의 이행에 대한 25년간의 검토와 평가에서는 주로 사회적 보호, 연금, 장기 요양 시스템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여성 노인이 언급되었고, 폭력 및 관련 지원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 및 정보의 부족 등도 논의되었다(see [E/CN.6/2020/3](#)). 마드리드고령화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은 젠더 주류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여성에 초점을 맞춘 조치를 위한 많은 권고안을 포함했다. 하지만, 가장 최근에 완료된 검토 주기에서는 여성 노인을 염두에 두고 국가가 취한 몇 가지 조치만이 있었다(see [E/CN.5/2017/6](#)).

71. 지역 차원에서, 아래의 세 가지 법률 조항은 젠더 평등,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한 국가의 의무를 상세히 설명한다. 아프리카 여성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인권헌장 의정서(Protocol to the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on the Rights of Women in Africa)는 홀로 된 여성의 권리(arts. 20 and 21.1)와 여성 노인의 특별한 보호(art. 22)를 담고 있다. 여성 노인에 대한 명시적 언급 없이 유럽의회(Council of Europe)의 여성과 가정폭력 방지 및 척결협약(Convention on Preventing and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은 세대 간 노인 학대를 다루고 여성 노인에게 적용되는데, 여기에는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 등이 담겨있다.<sup>81</sup> 여성에 대한 폭력의 예방, 처벌, 근절에 관한 미주협약(Inter-American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Punishment, and

<sup>80</sup> OHCHR, "Beijing+20 review: 'Older women must not remain invisible' – UN expert urges all Governments", 12 March 2015.

<sup>81</sup> Council of Europe, Explanatory Report to 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preventing and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 (2011), paras. 42 and 87.

Eradic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하에서 국가 당국은 여성 노인 등 특정 그룹이 겪는 폭력에 대한 높은 취약성을 고려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art. 9).

72. 노인의 권리에 관한 지역 법은 여성 노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보완할 수도 있다. 젠더 평등과 생애 주기적 접근은 미주노인인권보호협약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이며, 특히 폭력 근절, 장기 요양, 문맹 퇴치 및 재산권과 관련하여 젠더에 기반한 관점이 구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아직 발효되지 않은 아프리카 노인에 관한 아프리카인권헌장 의정서(Protocol to the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on the Rights of Older Persons in Africa)는 마법과 관련된 고발(art. 8)을 포함한 해로운 관행을 제거하기 위한 의무뿐만 아니라 여성 노인의 보호(art. 9)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73. 국가는 국제 및 지역 기준에 따라 고령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할 책임이 있다. 보고서 전반에 걸쳐 국가적 조치의 여러 긍정적인 예가 언급되어 있다.

## **B. 여성 노인의 참여, 기여 및 자기 통제**

### **(Participation, contribution and agency of older women)**

74. 여성 노인 자신이 그들의 필요, 우려, 권리를 위한 최고의 옹호자들이다. 국제인권법에 따라 고령 여성의 참여권을 존중, 보호, 이행하고, 이들이 모든 관련 정책적 논의에 참여할 의미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법률, 정책 및 서비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단계 등으로 구성된다.

75. 여성 노인의 관점을 가시화하고 그들의 중요한 사회적 기여를 인식하는 것 또한 국제 인권법에서 요구하는, 해롭고 편견 섞인 젠더 관련 고정관념을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치, 비즈니스, 문화, 시민 사회, 학계 및 기타 부문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여성 노인은 전통적인 가족 기반 돌봄 역할을 수행하는 할머니에 대한 가정과 더불어 노년의 수동성과 의존성에 대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터무니없는 인식에 도전할 강력한 예를 제시한다. 반대로, 일부 여성은 노년을 활동이나 자원봉사를 위한 기회로 본다. '대단한 할머니(Raging Grannies)'와 '뜨개질하는 할머니(Knitting Nannas)'와 같은 활동 단체는 노년기를 둘러싼 고정관념을 뒤집어 각각 사회정의 문제와 환경보호에 주의를 환기한다.

76. 국가 인권 기관, 시민 사회, 전문가 협회, 학계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도 여러 면에서 고령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독립 전문가와 공유된 예에는 광범위한 활동이 포함되는데, 여기에는 노인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및 간성인의 생활 개선, 여성 노인과 잘 소통하고 보살피기 위한 노인 의료 교육의 확대,<sup>82</sup>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노인 여성 중 재정적인 안정의 증진이나 그것에 대한 조사나, 직장에서의 갱년기 증상에 대한 치료와 대처에 대한 인식 제고와 연구 활동 등이 있다.<sup>83</sup>

77. 독립 전문가와 공유된 많은 자료는 경제적 역경과 부적절한 사회적

<sup>82</sup> Submission by International Longevity Centre Canada.

<sup>83</sup> Submission by the International Longevity Centre Global Alliance Committee on Gender and Ageing.

보호를 다루는 동시에 타인을 지지하고 돌보는 데 있어 존재하는 여성 노인의 특별한 회복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세대 간 중재 역할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여성 노인이 고아가 된 손자녀와 아픈 가족 구성원들에게 재정적, 물리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후천성 면역 결핍증(HIV/AIDS)의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할머니 대 할머니 캠페인(Grandmothers to Grandmothers Campaign)’과 같은 지역 간 이니셔티브는 이러한 맥락에서 지원, 옹호 및 변화의 강력한 도구임이 입증되었다.<sup>84</sup>

78. 긴급 상황 중 여성 노인은 세대 간 지원과 돌봄을 제공하는 동시에 가계 소득에도 기여한다. 더욱이, 그들은 극단적인 민족주의(extremist nationalist tendencies)에 대항하고, 급진화를 방지하고, 공동체의 역학에 대한 지식 창구 역할을 하면서, 분쟁 이전의 내러티브와 공유 생활의 경험을 전달함으로써 평화 구축과 갈등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sup>85</sup>

## V. 결론 및 권고 사항(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79. **여성의 고령화(feminization of ageing)**는 노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젠더 평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여성이 노인의 대다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성 인구에서 여성 노인의 비율도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여성 노인의 기여, 경험, 우려는 대부분 가려지고 무시되고 있다.

80. **연령과 젠더에 따른 차별의 교차점은 연령주의와 성차별주의를 결합한**

<sup>84</sup> Submission by the Stephen Lewis Foundation.

<sup>85</sup> Bela Kapur, “Older women in emergency crises: vulnerabilities, capacities and opportunities”, paper presented at the expert group meeting on older persons in emergency crises, New York, 15–17 May 2019.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포함한 독특한 형태의 불평등을 만든다. 생산적이지 않고 돌봄이 필요한 짐스러운 존재로 여겨지기 전에 여성 노인은 다른 이들에게 무급으로 돌봄 일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추진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확대는 시급한 젠더 이슈가 되고 있다.

81. 인생 과정에서 누적된 불이익은 여성이 낮은 교육 수준과 적은 배움의 기회, 적은 저축, 자산 및 재산, 연금이 적거나 부재한 채로 노년에 도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것은 적절한 생활 수준, 사회적 보호, 그리고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건강 수준에 대한 권리 등 그들의 권리 향유를 현저히 방해하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여성의 변하는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지원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많은 여성 노인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데, 이것은 폭력, 학대, 방치의 위험에 그들을 크게 노출시킬 뿐만 아니라 독립성과 자율성의 제한 또한 초래한다. 유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삶의 모든 단계에서 젠더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는 것은 현재와 미래 세대의 여성 노인이 존엄하게 살고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에 필수적이다.

82. 코로나19 팬데믹은 여성 노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 외로움 및 광범위한 정신 건강 문제에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존의 불평등을 가중시켰다. 결혼 상태, 시골 및 외딴 지역에 사는 것, 장애, 빈곤,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이주자 지위 또는 아프리카 혈통 등 특정 요소는 이러한 불평등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83. 국제 인권과 정책 프레임워크는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보장과 도구를 제공한다. 그렇지만 여성 노인이 직면하는 특정한 우려와 도전은 현재의 보고 및 모니터링 메커니즘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 장기요양과 지원, 완화 치료, 독립성과 자율성, 법적 능력, 특정한 형태의 폭력과 학대, 교육과 평생학습에 대한 접근, 또는 노년기의 부정적인 젠더 관련 고정관념 등 여성 노인에게 특히 중요한 이슈는 대부분 간과된다. 독립전문가는 이것이 노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증진하고 보호할 포괄적이고 통합된 국제법적 수단의 부재로 설명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한다.

84. 독립전문가는 국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다중적이고 악화하는 형태의 차별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부문 간 접근 방식을 취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 보호 및 실현할 의무를 이행한다. 이를 위하여, 성평등 및 가정폭력에 관한 국가정책 및 전략에서 고령화의 관점(ageing perspective)이 주류가 되도록 노력하고, 이러한 국가정책과 전략이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의 일반권고 제27호(2010년)에 따라 갱신되고 적절히 시행되도록 힘써야 한다;

b. 여성 노인의 도전과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지표를 포함하여 나이듦 및 노인과 관련된 모든 법률, 정책 및 행동 계획에서 젠더 관점을 주류화한다;

c. 정책적 논의뿐 아니라 정치, 시민, 경제, 사회, 문화 생활에도 여성 노인의 체계적이고, 의미 있고,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한다;

d. 예를 들어, 캠페인, 여성 노인 단체 지원 및 세대 간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고령 여성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에 대한 인정과 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등 젠더에 기반한 연령주의와 고정관념을 퇴치하기 위한 대책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e. 연령, 젠더 및 기타 사회인구학적 변수별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세분하여 고령 여성의 실제 현실을 포착하고, 주제 영역에 걸쳐 증거 기반 정책과 조치를 알린다; 또한, 조사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데이터 수집 방법론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사에는 요양원 거주자, 이주 여성 노인, 장애 여성 노인을 포함한 특정 범주의 여성 또는 여성 폭력의 피해자 등에 관한 것이 있다. 데이터 수집을 위한 연령 코호트(Age cohorts for data collection)는 만년의 다양한 단계에서 경험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을 정도로 세분되어야 한다;

f. 디지털 기량, 접근성 및 경제성에 초점을 맞추어 만년에 젠더화된 교육과 기량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한다. 법적 권리, 지원 혜택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접근할 수 있고 적절한 형식으로 제공되어, 모든 여성 노인이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들의 삶에 대해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한다;

g. 여성 노인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그들을 교육하며, 안정적이고 보수가 높은 일자리 등 노동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최신 기량을 쌓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고령 여성의 무급 돌봄 업무는 양육 혜택, 상담, 임시 돌봄(respite care) 등 사회적, 경제적 혜택과 지원을 통해 인정되어야 한다;

h. 특히, 비기여형, 보편 연금 제도를 제정하고, 차별 조항과 관행을 폐지하고, 무급 돌봄 서비스 기간을 보상하기 위한 적절한 기여 크레딧을 도입하고, 정기적으로 급여 수준을 조정함으로써 젠더에 따른 연금 개혁을 실시한다. 비기여형 연금 혜택은 여성 노인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고 주거 등 적절한 생활 수준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높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

i. 고령 여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인 재산 및 상속법과 관습 관행을 제거하고, 토지 강탈 등의 예와 관련하여 강력한 예방 및 보호 조치를 채택한다;

j. 특히, 여성 노인과 시골 및 외딴 지역에 거주하는 소외 계층을 위해 정신 건강, 인지 장애, 성 및 생식 건강, 갱년기와 폐경 후 증상, 예방적 관리 등을 포함해 차별적이지 않고, 접근할 수 있으며, 저렴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보장한다. 의료 서비스 종사자는 이와 관련한 교육을 받고, 이러한 상황을 잘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

k.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기반으로 한 장기 치료 및 완화 치료를 위한 접근 가능하고, 저렴하며, 통합적이고 양질인 인프라에 투자하고,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에 특전을 주며, 젠더와 관련된 시각을 반영해야 한다. 노인의 웰빙, 존엄성 및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강력한 기준과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l. 증거에 기반한 예방 및 보호 조치를 개발하기 위해 동기, 환경, 위험 요소 및 기타 요소를 포함하여 여성 노인의 폭력, 학대 및 방치 경험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 연구 및 분석을 수행하고 지원한다; 여성 대한 폭력과 관련된 정책, 조치 및 캠페인에서 여성 노인이 직면하는 신고와 정의에의 접근에 대한 특정한 취약성, 위험, 보호 요구 그리고 장벽이 고려되도록 한다; 폭력과 학대의 위험에 놓인 여성 노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잘 조직된 예방과 대응 절차를 개발하고, 돌봄 제공자와 법 집행자를 위한 적절한 훈련을 보장한다;

m. 기후 변화 및 재해 위험 감소 조치뿐만 아니라 긴급 및 인도적 조치의 계획, 대응 및 복구 단계에서 여성 노인의 특정 요구와 취약성이 식별되고 통합되도록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 검토에 고려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을 포함하여 향후 보다 효과적인 예방 및 대비 전략을 개발한다;

n. 인권조약기구 및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등의 기타 메커니즘에 대한 보고서와 북경행동강령(Beijing Platform of Action) 및 마드리드고령화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에 따른 검토를 통해 노년 여성의 특정한 입장과 관련 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o. 노인인권에 관한 국제 인권 프레임워크의 공백 및 단점을 해소하기 위한 작업을 가속하고, 노인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령화에 관한 개방형 실무그룹 내에서 젠더와 고령화 사이의 교차점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85. 독립전문가는 유엔 시스템에 나이와 성별에 따른 차별의 교차점뿐만 아니라 기타 이유로 인한 차별 등을 포함하여 노인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초점을 둘 것을 요구하는데, 예를 들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대한 진행 상황 모니터링에서나 여성 노인에 대한 폭력과 학대에 대한 보고와 데이터 수집에 변화를 추진하는 것 등에서의 초점을 말한다.

86. 독립전문가는 시민사회단체와 국가인권기관이 노인, 특히 여성 노인을 우선시하도록 권고하는데, 이것은 그들의 인권상황을 가시화하고 노인을 사회복지의 수혜자에서 권리자로 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증진하기 위해서이다.

\* 이번 국문 번역 요약본은 원문의 'IV. 여성 노인의 권리 증진 및 보호'와 'V. 결론 및 권고 사항'을 담았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보고서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https://www.undocs.org/Home/Mobile?FinalSymbol=A%2F76%2F157&Language=E&DeviceType=Desktop&LangRequested=False> ).

\*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아셈 지역과 국제사회의 고령화와 노인인권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자료를 요약 및 번역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기관에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번역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이은선 담당자( [elee@asemgac.org](mailto:elee@asemgac.org)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